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98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8월 09일

발 의 자: 박 석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곽향기, 김경훈,
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
김원중, 김재진, 김태수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윤종복, 이종태, 임춘대,
최민규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(안 제4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관리청이 수립한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 ③ (생략)	제4조(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시장은 관리청이 수립한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.</u>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(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제3항을 신설하여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